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련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6. .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이수련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교육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미시행 규정을 삭제 하는 등 평생학습센터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권친화적 용어 정비 (안 제15조)

- ‘소외계층’ → ‘교육취약계층’

나. 무료 강좌의 유연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제2항)

다.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안 제23조제1항)

라. 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대상 확대(안 제23조제1항제5호~제6호)

- 다자녀가정 및 다문화가족 추가

마. 미시행 규정 폐지(안 제22조~제24조)

- 유아 위탁료 관련 규정 폐지

- 별표 3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미래교육과

라. 입법예고 : 2024. 5. 31. ~ 2024. 6. 6. (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양주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과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 위해 각종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와 제23조에 무료 강좌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필요에 따라 무상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수강료의 면제 및 감면 대상에 다자녀가정과 다문화가족을 추가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교육 부담 완화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권담당실의 인권 친화적 용어 개선 방향에 맞추어 차별적 의미를 지닌 ‘소외계층’을 ‘교육취약계층’으로 대체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현재 미시행 규정 폐지 등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참고사항

※ 2020년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인권 친화적 개선 권고

<자치법규 등에 대한 인권친화적 정비 개선 권고-경기도 인권담당관>

○ 주요 정책이나 제도, 자치법규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개선

▲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날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으로만 규정하는 등 입장 및 자격 제한 조항이 있는 유형 ▲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시설 이용과 관련된 장애인의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은 등 대상과 목적이 상위법에 비해 협소하게 규정돼 권리를 제한하는 유형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 등에 따른 차별 유형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 및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유형 등에 대해 개정 권고(안)을 마련

○ 대표사례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2023.12.)

: ‘독서장애인’ → ‘지식정보 취약계층’

※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 소외계층 :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계층,

취약계층 :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

※ 참고사항

※ ‘다자녀가정’ 평생교육 감면 적용 경기도 조례 현황

<표1> 경기도 조례 현황 (2024. 05. 30. 현재)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1	성남시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2021.12.13.
2	평택시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2024.02.20.
3	김포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2024.03.27.
4	안산시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18.05.18.
5	파주시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22.12.28.
6	화성시	화성시 평생학습 조례	2024.01.04.
7	하남시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23.11.23.
8	의정부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22.09.20.
9	양주시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21.12.27.
10	의왕시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05.22.

※ ‘다문화가족’ 평생교육 감면 적용 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표2> 조례 현황 (2024. 05. 30. 현재)

연번	지자체	조례명	제·개정일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2023.07.18.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2024.05.14.
3	김포시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2024.03.27.
4	의정부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2022.09.20.

☑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나. 재정 수반 요인

- 일부 강좌 무료로 따른 세입 영향
- 다자녀 가정 수강료 면제
- 다문화 가족 수강료 면제

2. 미 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 첨부 사유

- 현행 남양주시 평생교육은 취·창업 교육을 제외하고는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다만 제22조에 무료조항을 명시하여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제 세입에는 영향이 미미함.
- 현행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3조에 근거하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정, 국가 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다자녀가정 등에 수강료 면제중인 바, 2023년도 총 832건 4천4백만원(다자녀 646건 3천4백만)으로 총 비용이 1억 미만으로 집계됨
- 다문화가정이 평생학습센터 유료 강좌에 신청한 경우가 미미함(2023년도 기준 1건), 다만 행안부 등록된 2022년 기준 자녀 포함한 우리시 다문화 가구원 현황은 13,218명으로 다문화 가정 면제대상 추가시에도 소액으로 추산됨 (※ 13,218명의 1% 수강시 130명×45,000원=6백만원 / 남양주 평균 수강률 0.5%)

4. 작성자

문화교육국 미래교육과 이유미